

선 람	기 관 의 장

제925호 2016. 7. 1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85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8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8

공 고

-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12호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8
- 삼척시 공고 제495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53
- 삼척시 공고 제496호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64

공 람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6 - 85 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삼척시 관내 신규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11.

삼 척 시 장

1. 고시내용

구 분	고 시 대 상	성과 조서	비 고
지적기준점	· 신설 도근점 81점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2점	[붙임 참조]	

2. 고시 기간 : 2016. 07. 11. ~ 2016. 07. 24.(14일간)

3. 고시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제조사부서 (☎570-38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조서.

삼척시 고시 제2016 - 8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7. 1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길 51 외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4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길 51	2016071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739-7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83-11	20160715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도로 구간내주요시설(청솔,석미아파트)활용도로명	
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331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행정구역(미로, 노곡,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40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44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48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50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54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68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76	폐지	20160715	건물말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 명칭활용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내역

구분	순번	충권주소		도로명주소		주소명	시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개	폐	10 건	폐지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리 14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리 51	폐지	20160715	간불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교통 739-7		강원도 삼척시 황석로 83-11	폐지	20160715	간불신축	20090626	도로명주소부여(도로명주소변경)용
	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331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도로명주소부여(도로명주소변경)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40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44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48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50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54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68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78		폐지	폐지	20160715	간불민소	20090618	호산해수욕장명칭활용

삼척시 고시 제 2016 - 88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22일

삼척시장

1.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연번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1	동할5지구	가곡면 동할리 산55-14 일원	인공비탈	D	16,401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2	역은1지구	해장면 중천리 23-2 일원	인공비탈	D	4,679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3	하만결1지구	노곡면 하만결리 산40-1 일원	인공비탈	C	5,929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4	하만결2지구	노곡면 상안리 산10-1 일원	인공비탈	C	3,020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5	풍곡1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128-62 일원	인공비탈	C	6,851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6	풍곡5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128-53 일원	인공비탈	D	2,531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7	풍곡6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128-52 일원	인공비탈	C	3,065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8	풍곡7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128-42 일원	민공비탈	C	3,292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9	풍곡8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128-42 일원	인공비탈	C	4,688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0	풍곡11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72-7 일원	인공비탈	D	3,319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1	풍곡12지구	가곡면 풍곡리 산128-35 일원	인공비탈	D	3,415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2	동할3지구	가곡면 동할리 산55-5 일원	민공비탈	D	40,729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3	동할6지구	가곡면 동할리 산22-4 일원	민공비탈	D	6,820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4	노곡1지구	원덕읍 신왕리 산208-6 일원	인공비탈	D	11,970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5	노곡5지구	원덕읍 노경리 산117-4 일원	인공비탈	D	3,020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일련 번호	지구명	위치	지점개요			지점사유	비고
			지점면적 (㎡)	유형	등급		
16	신리1지구	도계읍 신리 533-7 일원	인공비탈	C	1,485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7	신리2지구	도계읍 신리 543-1 일원	인공비탈	D	2,408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8	추동1지구	하장면 광천리 산64-1 일원	인공비탈	C	1,053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19	추동2지구	하장면 추동리 산48-2 일원	인공비탈	C	2,027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3.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16. 07. 22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절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물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나.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안전관리담당 (☎033-248-6890)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지형도 및 용지도 1부. 끝.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동활5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55-14 일원(지방도416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역둔1지구
- 위치 :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23-2 일원(지방도424호선)



위치도



현장 사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하반천1지구
- 위치 :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산40-1 일원(지방도424호선)



위치도



현장 사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하반천2지구
- 위치 : 삼척시 노곡면 상반천리 산10-1 일원(지방도424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봉곡1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봉곡리 산128-62 일원(지방도910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동곡5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53 일원(지방도910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동곡6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53 일원(지방도910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풍곡7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42 일원(지방도910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풍곡8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42 일원(지방도910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동화3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동화리 산55-5 일원(지방도416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동화6지구
- 위치 : 삼척시 가곡면 동화리 산22-4 일원(지방도416호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노경1지구
- 위치 :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산208-8 일원(지방도416호선)



위치도



현장 사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노경5지구
- 위치 :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117-4 일원(지방도41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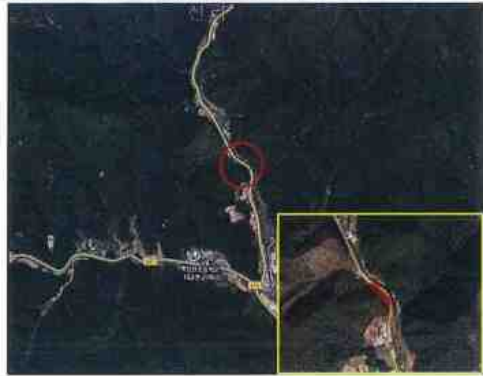
위치도



현장 사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신리1지구
- 위치 : 삼척시 도계읍 신리 533-7 일원(지방도427호선)



위치도



현장사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신리2지구
- 위치 : 삼척시 도계읍 신리 543-1 일원(지방도427호선)



위치도



현장사진

급경사지 현황

- 지구명 : 추동1지구
- 위치 : 삼척시 하장면 잠전리 산64-1 일원(국지도28호선)



위치도



현장 사진

급경사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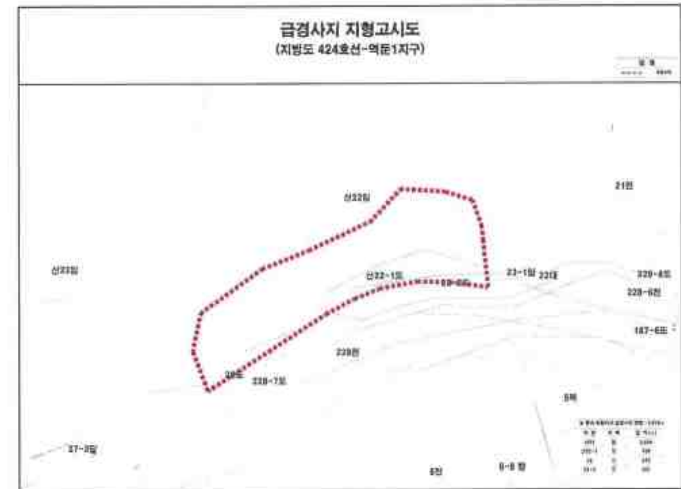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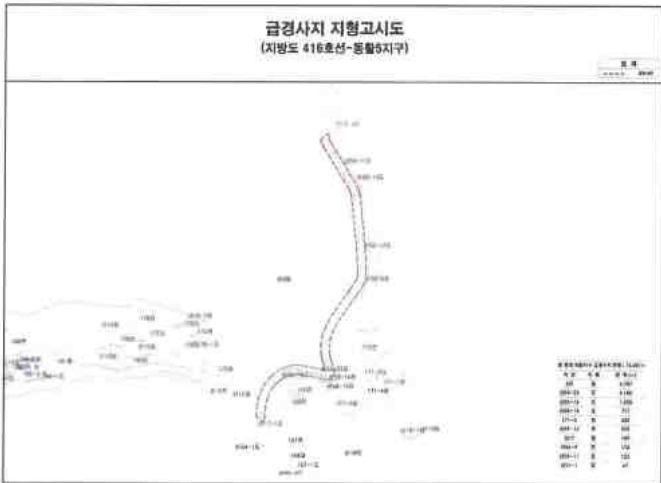
- 지구명 : 추동2지구
- 위치 :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48-2 일원(국지도28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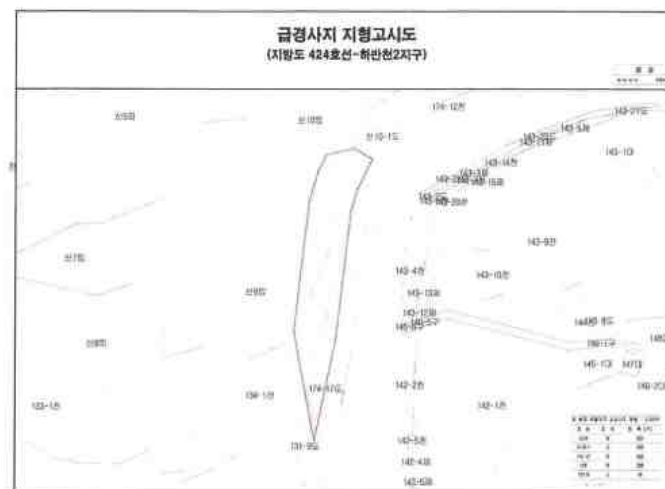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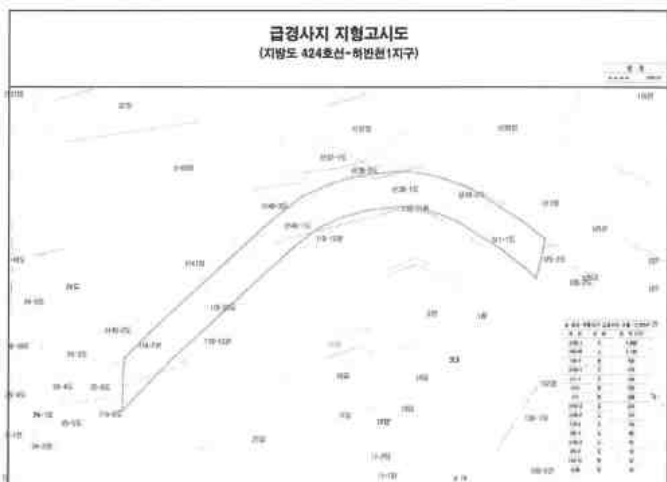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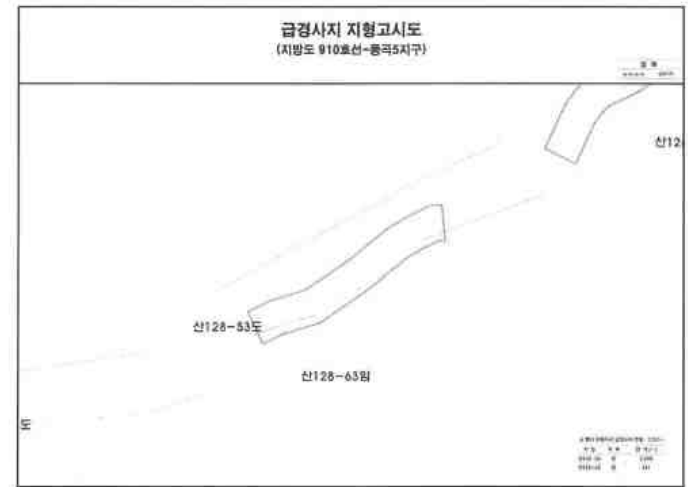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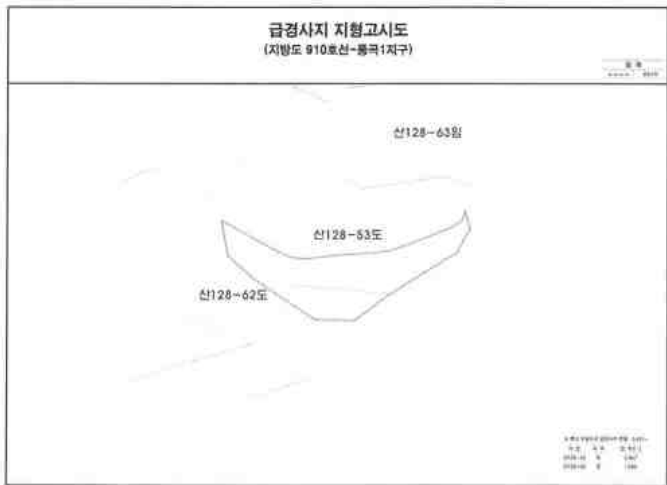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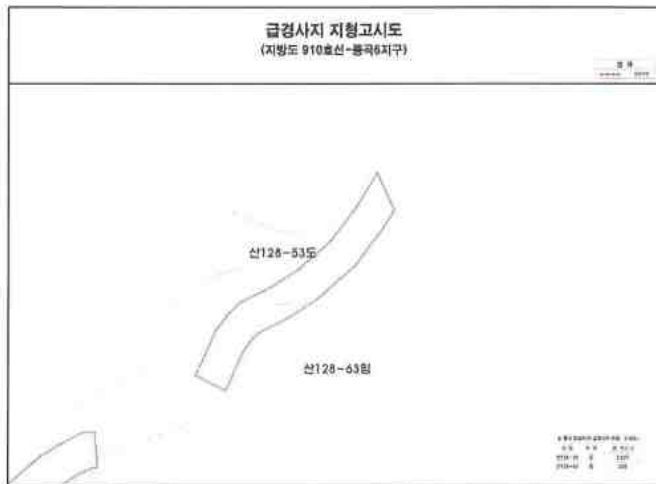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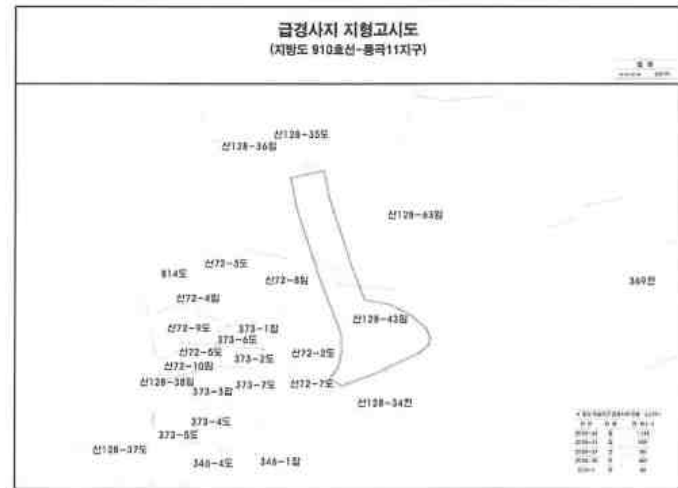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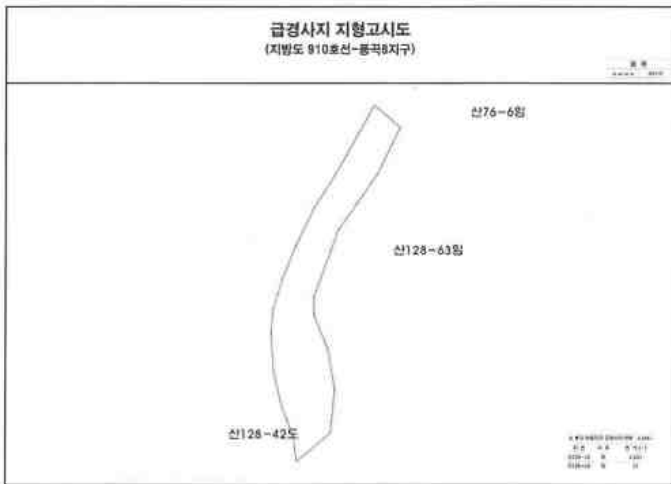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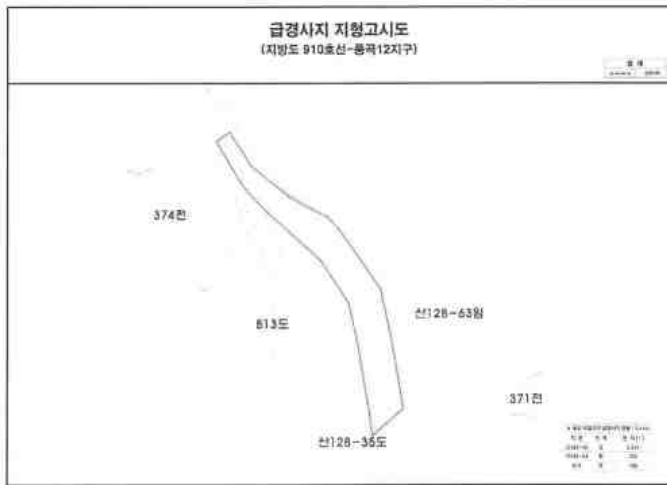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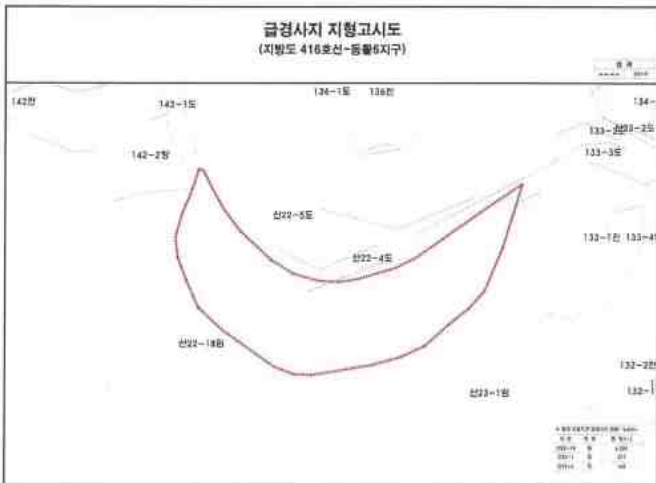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16-12호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푸드트럭영업)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의거 영업지정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의거 영업지정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안 제1조 : 규칙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나. 규칙안 제2조 : 영업장소 지정을 규정함.
- 다. 규칙안 제3조 : 영업신고시 첨부서류를 규정함.
- 라. 규칙안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 (참조: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2) 전 화 : 033-570-3322
 - 3) FAX : 033-570-4169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삼척시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식품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4. 그 밖에 삼척시장이 식품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삼척시 공고 제 2016-495호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1. 제안이유

- 목욕시설이 취약하여 목욕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은 80세이상 노인으로 함(안 제2조)
- 나. 지원방법은 목욕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안 제5조)
- 다. 목욕권 사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안 제7조)
- 라. 요금정산은 목욕요금 후불제를 적용(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 (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2) 전 화 : 033-570-3315
- 3) FAX : 033-570-313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2.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①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욕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시중 목욕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목욕권을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반기중에 전입하거나 80세에 도달한 노인의 경우에는 전입일 또는 80세에 도달한 달에 해당 반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한다.

제7조(목욕권 사용)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 ① 시장은 한국목욕중앙회 삼척시지부장(이하 “목욕중앙회시지부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중앙회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목욕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목욕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0년도 분기 No.

어르신 목욕권
(원권)

삼척시장 직인

(뒷면)

유의사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삼척시 관내 목욕업소에서만 이용 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목욕비 청구서(제8조제2항 관련)

사업명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업소명		대표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사업기간	20 ~ 20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신고필증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	---

[별지 제3호서식]

목욕권 수불대장(제10조 관련)

(본청)

구분	일자	일련번호 (목욕권)	담당자			결과
			보유 매수	지급 매수	잔량 매수	
계						
본청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읍면동)

일자	적요	읍면동장			결과
		수입 매수	지출 매수	잔량 매수	

- ※ 1. "적요"에는 수불 사유 기입
- 2. "수입" 및 "지출"에는 매수와 일련번호 기입

[별지 제4호서식]

목욕권 수령명부(제10조 관련)

(읍·면·동)

(/ #기)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일	지급 매수	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삼척시 어르신 목욕권 신청서

신청자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해당자)	
	연 락 처		(집) (휴대폰)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집) (휴대폰)	
수급자와의 관계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어르신 목욕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삼척시장 귀하

담당자 확 인	수급연령 해당여부	타 목욕서비스 이용 여부
담당자 의 견	<적합>	<부적합>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 2016-496호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행복쉼터의 등록신청 및 절차,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예산지원 및 방법, 지원증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 (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2) 전 화 : 033-570-3315
- 3) FAX : 033-570-313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독거노인 행복쉼터”란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행복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제외)
 - 2. 공동거주 희망자 명단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등록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거나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독거노인 자택 등으로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겨울철 한파·대설주의보 발령·폭염발생·화재로 인한 가옥소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행복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행복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인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복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하반기 연 2회
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4.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수시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행복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2. 제4조 제2호의 일시적인 보호가 해소된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행복쉼터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 행복쉼터 등록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시설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 사유	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노인 행복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리·통장 (서명 또는 날인)

삼척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독거노인 행복쉼터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행복쉼터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주자		
	시설의 대표자	성명 주소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권, 경로당의 경우 제외)	수수료 없음
-------------	--	-----------

【붙임 2】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